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583호 2019. 9. 2.(월)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고 시】

○ 고시 제2019-104호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 고시 제2019-108호 고창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3

○ 고시 제2019-109호 고창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4

○ 고시 제2019-110호 고창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공 고】

○ 공고 제2019-1148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6

○ 공고 제2019-1166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37

○ 공고 제2019-1184호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선발공고 49

○ 공고 제2019-120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 점용 사용) 허가공고 58

○ 공고 제2019-120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부안면소재지도로개설공사)공고 60

○ 공고 제2019-120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 점용 사용) 허가공고 64

○ 공고 제2019-72호 (농업기술센터)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66

발행 고 창 군(편집 기획예산담당관 ☎ 063-560-2326)

고창군 고시 제2019-104호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관계도서를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6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 목 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물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을 도모

3. 사 업 비
- 당초 : 4,700백만원(국비 3,300 도비 668 군비 732)
- 변경 : 4,749백만원(국비 3,300 도비 668 군비 732, 이자수익 49)

4. 주요 사업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 일원
○ 권역규모 : 하련리 254ha
○ 면 적 : 해리면 3,953ha, 사업대상지 254ha
○ 가구·인구 : 364호, 인구 737명
○ 기초생활기반분야 : 해리체육센터 조성면적A=9,690㎡, 건축면적 A=935.5㎡
○ 지역경관개선분야 : 시장정비 A=1,532㎡, 남시당산나무정비 A=80㎡, 하련쉼터A=211.64㎡, 청룡산쉼터 A=69.55㎡, 평장마을쉼터 A=79.38㎡, 중앙쉼터 A=736.2㎡
○ 지역역량강화분야 :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경영지원 등

5.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위탁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6. 사업시행기간 : 2015. 1. ~ 2019. 12. 30.

□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40,200〉 4,700,000 [-]	〈-〉 4,700,000 [48,384]	〈-〉 4,700,000 [-]	〈-〉 4,700,000 [48,384]	〈-〉 - [-]	
국 비	3,290,000	3,290,000	3,290,000	3,290,000	-	
지방비	1,410,000	1,410,000	1,410,000	1,410,000	-	
이자수익		[48,384]	-	[48,384]		
민간부담	〈40,200〉	〈-〉	〈-〉	〈-〉	〈-〉	

(지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시 행 계 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40,200〉 4,700,000 [-]**	**〈-〉 4,700,000 [48,384]**	**〈-〉 4,700,000 [-]**	**〈-〉 4,700,000 [48,384]**	**〈-〉 - [48,384]**	
○ 공사비	**〈40,200〉 2,984,574 [-]**	**〈-〉 2,846,815 [48,384]**	**〈-〉 2,764,716 [-]**	**〈-〉 2,846,815 [48,384]**	**<->** **82,099 [48,384]**	
-기초생활기반	1,950,180 [-]	2,060,975 [43,334]	1,978,876 [-]	2,060,975 [43,334]	82,099 [43,334]	
-지역경관개선	〈40,200〉 738,894 [-]	〈-〉 515,840 [5,050]	〈-〉 515,840 [-]	〈-〉 515,840 [5,050]	〈-〉 - [5,050]	
-지역역량강화	295,500	**270,000**	270,000	**270,000**	-	
○ 자재대	**631,273**	**490,036**	**450,518**	**490,036**	**39,518**	
○ 용지매수비	**373,501**	**611,083**	**611,083**	**611,083**	**-**	
○ 관리비 등	**710,652**	**752,066**	**873,683**	**752,066**	**△121,617**	
- 기본조사비	112,547	112,547	112,547	112,547	-	
- 경관계획수립비	98,387	-	-	-	-	
- 세부설계비	117,487	104,678	104,678	104,678	-	
- 공사감리비	287,509	270,681	287,509	270,681	△16,828	
- 사업관리비	59,162	51,440	59,162	51,440	△7,722	
- 문화재시(발)굴용역	-	189,700	189,700	189,700	-	
- 기타경비(잡지출)	35,560	23,020	120,087	23,020	△97,067	

고창군 고시 제2019-108호

고창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2250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8월 일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위치 :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2250번지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 : 3,958,800㎡
   다. 제 한 사 유 : 생태계 보전 및 난개발 방지
   라.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마.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한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신고된 개발행위
   -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 내 행위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
   -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공공사업에 한함)
   바. 제 한 기 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 : “실음생략”

고창군 고시 제2019-109호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063-560-2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8월 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	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창읍 월곡리, 교촌리 일원	149,625	-	149,625	전북고시제31호 ('10.2.12)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9,625	-	149,625	100.0	
자연녹지지역	149,625	-	149,625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2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1	감) 1	-	102	감) 102	-	845.2	감) 845.2	-	
소로	1	감) 1	-	102	감) 102	-	845.2	감) 845.2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110	20	집산도로	59	월곡리464-4	월곡리482-1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중로	2	107	16	집산도로	129	월곡리482-2	월곡리487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중로	2	108	15	집산도로	43	월곡리189	월곡리191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중로	3	109	12	집산도로	314	월곡리482-2	월곡리489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중로	3	110	12	집산도로	497	월곡리482-2	월곡리188-1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29m 공원중복
기정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469	월곡리487	월곡리192-2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29m 공원중복
폐지	소로	2	169	8	국지도로	102	월곡리482-3	월곡리483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1	2.5	특수도로	22	월곡리514	월곡리514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2	2.5	특수도로	24	월곡리183	월곡리513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3	2.5	특수도로	24	월곡리530	월곡리529-1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4	2.5	특수도로	20	월곡리531	월곡리532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5	2.5	특수도로	23	월곡리534	월곡리536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6	2.5	특수도로	23	월곡리183	월곡리511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7	2.5	특수도로	19	월곡리183	월곡리183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8	2.5	특수도로	23	월곡리183	월곡리180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29	2.5	특수도로	23	월곡리180	월곡리181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30	2.5	특수도로	23	월곡리187	월곡리187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31	2.5	특수도로	20	월곡리186	월곡리186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32	2.5	특수도로	22	월곡리188-2	월곡리188-2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33	2.5	특수도로	24	월곡리188-2	월곡리186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04	6	국지도로	94	월곡리482-3	월곡리483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05	6	국지도로	87	월곡리483	월곡리250-5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기정	소로	3	206	6	국지도로	100	월곡리507	월곡리514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2011.04.1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207	6	국지도로	87	월곡리507	월곡리530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08	6	국지도로	95	월곡리527	월곡리511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09	6	국지도로	98	월곡리511	월곡리183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0	6	국지도로	86	월곡리183	월곡리185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1	6	국지도로	92	월곡리185	월곡리187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2	6	국지도로	103	월곡리186	월곡리188-1	일반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3	5	특수도로	47	월곡리483	월곡리478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6	2.5	특수도로	19	월곡리482-3	월곡리482-3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7	1.5	특수도로	23	월곡리482-3	월곡리482-4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8	2.0	특수도로	24	월곡리250-2	월곡리250-9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19	1.5	특수도로	22	월곡리250-9	월곡리250-9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소로	3	220	2.5	특수도로	21	월곡리507	월곡리507	보행자전용도로	고창고 제15호 (2011.04.15.)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69	-	• 군계획시설 폐지 - 위치 : 고창읍 월곡리 971도 - 연장 : 102m → 0m(감 102m) - 면적 : 845.2㎡ → 0㎡ (감 845.2㎡)	• 월곡지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주변 군계획시설(주차장) 및 문화시설(도서관)간의 연계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주차장	월곡리 877 일원	827.9	증) 177.9	1,005.8	고창고 제15호 (2011.04.15.)	
변경	10	주차장	월곡리 861 일원	1,216.9	-	1,216.9	고창고 제15호 (2011.04.15.)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9	주차장	• 주차장 면적 변경 - 위치: 고창읍 월곡리 860차 - 면적: 827.9㎡ → 1,005.8㎡(증 177.9㎡)	•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문화시설(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하여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0	주차장	• 주차장 위치변경 - 기정 : 고창읍 월곡리 860차 - 변경 : 고창읍 월곡리 861대 일원	•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주변 군계획시설과의 연계(사회복지시설)를 위하여 고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녹지	완충녹지	고창읍 월곡리 249-2 일원	3,603.1	-	3,603.1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고창읍 월곡리 196 일원	595.1	-	595.1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고창읍 월곡리 196-2 일원	2,117.8	-	2,117.8	고창고 제15호 (2011.04.15.)	

(2)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4	월곡1	근린공원	고창읍 월곡리 485-2 일원	42,485.1	-	42,485.1	고창고 제15호 (2011.04.15.)	
기정	15	월곡2	소공원	고창읍 월곡리 176-3 일원	838.8	-	838.8	고창고 제15호 (2011.04.15.)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사회복지시설	고창읍 월곡리 862 일원	6,934.7	증) 1,234.5	8,169.2	고창고 제15호 (2011.04.15.)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4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면적변경 - 위치: 고창읍 월곡리 862대일원 - 면적: 6,934.7㎡ → 8,169.2㎡ (증 1,234.5㎡)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1)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4	월곡천	지방 하천	월곡리 195-3 일원	월곡리 558-3 일원	농어촌 뉴타운	1,578 (479)	22	36,587 (11,342)	고창고 제115호 (2011.04.15.)	

주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면적임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122,045.6	122,890.8	-		-		122,045.6	122,890.8	-	
1		1			3,930.3	1		월곡리 859번지			3,930.3	(분할 및 합병 불허)	
2	2	2	2	3,410.7	5,083.8	1	1	월곡리 873번지	월곡리 873번지 일원	1,011.9	4,078.0	(분할 및 합병 불허)	-
						2		월곡리 874번지		1,059.2			
						3		월곡리 875번지		639.9			
						4		월곡리 876번지		699.7			
3		3		827.9		1	2	월곡리 877번지	월곡리 877번지 일원	827.9	1,005.8		
4		4			13,861.8	1		월곡리 979번지			3,603.1	(분할 및 합병 불허)	
						2		월곡리 981번지			595.1		
						3		월곡리 878번지			438.8		
						4		월곡리 879번지			435.6		
						5		월곡리 880번지			436.5		
						6		월곡리 881번지			437.1		
						7		월곡리 882번지			435.3		
						8		월곡리 883번지			435.9		
						9		월곡리 884번지			440.7		
						10		월곡리 885번지			431.8		
						11		월곡리 886번지			435.6		
						12		월곡리 887번지			434.3		
						13		월곡리 888번지			433.7		
						14		월곡리 889번지			436.7		
						15		월곡리 980번지			1,172.5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16		월곡리 195-3번지		1,391.0			
						17		월곡리 961번지		506.6			
						18		월곡리 962번지		459.0			
						19		월곡리 963번지		458.3			
						20		월곡리 964번지		444.2			
5		5		36,042.7		1		월곡리 983번지		2,117.8		(분할 및 합병 불허)	
						2		월곡리 985번지		838.8			
						3		월곡리 984번지		5,058.5			
						4		월곡리 965번지		439.2			
						5		월곡리 966번지		436.5			
						6		월곡리 967번지		435.6			
						7		월곡리 968번지		525.5			
						8		월곡리 1011번지		11,337.3			
						9		월곡리 957번지		457.1			
						10		월곡리 956번지		449.5			
						11		월곡리 955번지		452.1			
						12		월곡리 954번지		451.1			
						13		월곡리 953번지		458.3			
						14		월곡리 952번지		459.5			
						15		월곡리 951번지		450.7			
						16		월곡리 939번지		442.9			
						17		월곡리 938번지		447.3			
						18		월곡리 937번지		453.0			
						19		월곡리 936번지		459.9			
						20		월곡리 935번지		465.0			
						21		월곡리 934번지		462.9			
						22		월곡리 922번지		452.2			
						23		월곡리 921번지		452.9			
						24		월곡리 920번지		442.9			
						25		월곡리 919번지		445.2			
						26		월곡리 918번지		444.9			
						27		월곡리 917번지		456.0			
						28		월곡리 916번지		447.9			
						29		월곡리 905번지		423.8			
						30		월곡리 904번지		435.6			
						31		월곡리 903번지		444.0			
						32		월곡리 902번지		442.2			
						33		월곡리 901번지		432.7			
						34		월곡리 900번지		436.2			
						35		월곡리 899번지		436.9			
						36		월곡리 898번지		436.1			
						37		월곡리 558-5일원		1,723.0			
						38		월곡리 1008번지		591.7			
6		6		9,386.1		1	1	월곡리 862번지	월곡리 862번지일원	6,934.7	8,169.2	(분할 및 합병 불허)	-
						2	2	월곡리 860번지	월곡리 861번지	1,216.9	1,216.9		
						3	-	월곡리 861번지	-	1,234.5	-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7	7			45,501.1		1		월곡리 863번지		4,573.1		(분할 및 합병 불허)	
						2		월곡리 1009번지		11,202.8			
						3		월곡리 558-5 일원		7,488.0			
						4		월곡리 1010번지		7,245.8			
						5		월곡리 864번지		466.3			
						6		월곡리 865번지		454.2			
						7		월곡리 866번지		453.9			
						8		월곡리 867번지		445.7			
						9		월곡리 868번지		472.4			
						10		월곡리 869번지		446.9			
						11		월곡리 870번지		441.4			
						12		월곡리 892번지		471.7			
						13		월곡리 893번지		450.2			
						14		월곡리 894번지		451.2			
						15		월곡리 895번지		450.5			
						16		월곡리 896번지		471.9			
						17		월곡리 897번지		474.7			
						18		월곡리 948 일원		430.8			
						19		월곡리 947 일원		456.3			
						20		월곡리 946 일원		458.4			
						21		월곡리 945 일원		437.7			
						22		월곡리 944 일원		440.0			
						23		월곡리 943 일원		440.7			
						24		월곡리 942 일원		452.6			
						25		월곡리 931 일원		450.0			
						26		월곡리 930 일원		448.3			
						27		월곡리 929 일원		440.1			
						28		월곡리 928 일원		440.5			
						29		월곡리 927 일원		435.9			
						30		월곡리 926번지		451.0			
						31		월곡리 925번지		434.6			
						32		월곡리 913번지		513.8			
						33		월곡리 912번지		483.8			
						34		월곡리 911번지		451.0			
						35		월곡리 910번지		459.1			
						36		월곡리 909번지		456.7			
						37		월곡리 908번지		459.1			
8	8			469.3		1		월곡리 871번지		469.3		(분할 및 합병 불허)	
9	9			470.9		1		월곡리 872번지		470.9		(분할 및 합병 불허)	
10	10			471.1		1		월곡리 890번지		471.1		(분할 및 합병 불허)	
11	11			484.2		1		월곡리 891번지		484.2		(분할 및 합병 불허)	
12	12			463.4		1		월곡리 906번지		463.4		(분할 및 합병 불허)	
13	13			454.4		1		월곡리 907번지		454.4		(분할 및 합병 불허)	
14	14			558.8		1		월곡리 914번지		558.8		(분할 및 합병 불허)	
15	15			559.5		1		월곡리 915번지		559.5		(분할 및 합병 불허)	
16	16			490.1		1		월곡리 923번지		490.1		(분할 및 합병 불허)	
17	17			485.7		1		월곡리 924번지		485.7		(분할 및 합병 불허)	
18	18			454.0		1		월곡리 932번지		454.0		(분할 및 합병 불허)	
19	19			455.7		1		월곡리 933번지		455.7		(분할 및 합병 불허)	
20	20			450.5		1		월곡리 940번지		450.5		(분할 및 합병 불허)	

도면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가정	변경
21		21		452.0		1		월곡리 941번지		452.0		(분할 및 합병 불허)	
22		22		460.1		1		월곡리 949번지		460.1		(분할 및 합병 불허)	
23		23		461.2		1		월곡리 950번지		461.2		(분할 및 합병 불허)	
24		24		475.6		1		월곡리 958번지		475.6		(분할 및 합병 불허)	
25		25		968.5		1		월곡리 959번지		479.5		(분할 및 합병 불허)	
						2		월곡리 960번지		489.0		(분할 및 합병 불허)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문화복지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문화복지시설 1-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및 부속용도 • 노유자시설 및 부속용도 • 수련시설 중 가목 생활권수련시설 및 부속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목 중 휴게음식점, 사목 중 마을공동구판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 주출입구는 주 도로(대로3-1호선)를 향하도록 하며 주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 건축물 1층 전면의 경우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성과 개방감을 줄 수 있는 투시형 셔터 등 투과성 재질로 처리되도록 한다. **▨ 건축선** • 건축지정선 - 대로3-1호선 변 1.5m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지정선 길이의 2/3 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건축 지정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형태 및 색채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경사형(경사 3/10~7/10)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설치시 옥상 녹화 또는 옥상 조경을 하도록 한다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옥상 부분은 옥외 창고 사용을 금지한다. ▨ **색채** • 외벽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거나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 사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사용한다 ▨ **담장 및 계단**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에 조성된 녹지 공간과 시각적으로 통합 될 수 있도록 1.0m이하의 화목류 생 울타리 담장 설치에 한하여 담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 근생, 도서관, 문화및집회시설 용지 : “변경”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2 - ①~④	2 - ①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 바목의 도서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목 단란주점 및 타목 안마시술소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 주출입구는 주 도로(대로3-1호선)를 향하도록 하며 주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 가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 • 건축물 1층 전면의 경우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성과 개방감을 줄 수 있는 투시형 셔터 등 투과성 재질로 처리되도록 한다. ▨ **건축선** • 건축지정선 - 대로3-1호선 변 1.5m •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지정선 길이의 2/3 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건축 지정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형태 및 색채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경사형(경사 3/10~7/10)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설치시 옥상녹화 또는 옥상 조경을 하도록 한다.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 옥상 부분은 옥외 창고 사용을 금지한다. ▨ **색채** • 외벽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거나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 사용한다. • 건축물 외벽의 색상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혼합색을 사용한다. ▨ **담장 및 계단** • 담장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건축지정선 후퇴부에 조성된 녹지 공간과 시각적으로 통합 될 수 있도록 1.0m이하의 화목류 생 울타리 담장 설치에 한하여 담장의 설치를 허용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다. 단독주택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4 - ③~⑭, ⑰~⑳ 5 - ④~⑦, ⑨~㊱ 7 - ⑤~㊲ 8~24 - ① 25 - ①~②	기정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
		변경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소매점 및 나목 휴게음식점 ※ 단독주택을 제외한 용도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 40% 이내로 함
		건폐율	기정	• 30% 이하
			변경	• 60% 이하
		용적률	기정	• 60% 이하
			변경	• 100% 이하
		높이(층수)		• 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td><td></td><td>▨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3-110호선 및 중로 3-111호선 변 1.5m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 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그에 합당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 지붕
• 지붕은 경사형 지붕으로 한다(경사 3/10~7/10)
• 옥탑 구조물 설치시 경사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td></tr>
<tr><td></td><td></td><td>형태 및 색채</td><td>▨ 외관
• 도로변 도시가스, 설비 배관 등 시설물 노출 금지
▨ 색채
• 지붕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한다.
• 주조색은 IVORY 칼라를 사용, 타 칼라의 색상의 배합시 적절한 채도, 명도 조절로 안정된 이미지 창출
<table>
<tr><th>채색부위</th><th>명도</th><th>채도</th><th>색상계열</th><th>예 시</th></tr>
<tr><td>지붕색</td><td>3.0-5.0</td><td>-</td><td>N</td><td></td></tr>
<tr><td>주조색</td><td>9.0 이상</td><td>-</td><td>N</td><td></td></tr>
<tr><td rowspan="2">강조색</td><td rowspan="2">8.0 이상</td><td rowspan="2">1.0 이하</td><td>YR</td><td></td></tr>
<tr><td>Y</td><td></td></tr>
</table>
▨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거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에 조성된 녹지 공간과 시각적으로 통합 될 수 있도록 1.0m 이하의 화목류 생 울타리 담장 및 투시형 담장의 설치에 한하여 허용한다.</td></tr>
</table>

라. 농촌체험시설 : “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5">-</td><td rowspan="5">5 - ③</td><td>지정용도</td><td>• 「건축법」 시행령「별표1」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 「건축법」 시행령「별표1」규정에 의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td></tr>
<tr><td>건 폐 율</td><td>• 20% 이하</td></tr>
<tr><td>용 적 률</td><td>• 80% 이하</td></tr>
<tr><td>높이(층수)</td><td>• 4층 이하</td></tr>
<tr><td>배치 및 건축선</td><td>▨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 건축물의 주전면은 도로의 방향 및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td></tr>
</table>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 건축계획 수용한다.
		형태 및 색채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경사형(경사 3/10~7/10)을 권장 하되, 평지붕의 설치시 옥상 녹화 또는 옥상 조경을 하여야 함 • 옥탑 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 옥상의 설비 기기 등 경관 불량 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색상 및 재료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색채 사용한다. ▨ **담장 및 계단**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 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 높이의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 경우 허용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마. 사회복지시설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6 - ①	지정용도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및 부대시설
		건 폐 율	기정	• 40% 이하
			변경	• 60% 이하
		용 적 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 건축물의 주전면은 도로의 방향 및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할 것을 권장 •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 건축계획 수용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배치한다.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2-107호선 및 중로3-109호선변 1.5m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건축 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형태 및 색채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은 경사형(경사 3/10~7/10)을 권장 하되, 평지붕 설치시 옥상 녹화 또는 옥상 조경을 하여야 함 • 옥탑 구조물 설치시 지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 **외관**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 건축계획 수용하되 미관과 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 배관등 노출 금지 ▨ **색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색상 및 재료를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색채를 사용한다. ▨ **담장 및 계단** • 대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 높이의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경우 허용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약인·임산부·환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바. 어린이집용지: “폐지”

사. 커뮤니티센터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7 - ①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 사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노유자시설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60% 이하
		높이(층수)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을 고려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

도면번호	위치(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화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 • 개별 건축 계획을 수용하되 마을내 랜드마크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사용한다.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배치한다.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2-107호선 및 중로3-110호선변 1.5m • 건축 한계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
		형태 및 색채	**▨ 지붕 및 옥상층**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옥상에는 옥상 녹화 또는 옥상 조경을 하도록 한다 • 옥상층의 시설물(물탱크, 냉각탑, 기기실, 환기구 등)등의 경관 불량 요소는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용 시설 제외) **▨ 외관** • 커뮤니티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건물 배치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별 건축계획 수용하되 미관과 기능을 고려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권장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비 배관등 노출 금지 **▨ 담장 및 계단** •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개방되도록 권장하며, 대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 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0m 높이의 투시형 또는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경우 허용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마을내 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색은 안정된 조화로움과 시각적 편안함을 위해 Gray Tone 색상을 선정하여 이지적 이미지 연출 • 주조색은 온화하고 투명한 이미지를 주는 Blue Color Glass로 차분하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 • 강조색은 자연석 매쉬와 목재사이딩 등 Natural한 느낌의 소재와 마감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칼라 사용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가구번호)</th><th>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td><td></td><td></td><td>
<table>
<tr><th>채색부위</th><th>명도</th><th>채도</th><th>색상계열</th><th>예 시</th></tr>
<tr><td>주조색</td><td colspan="3">재료자체의 물성에 의함</td><td row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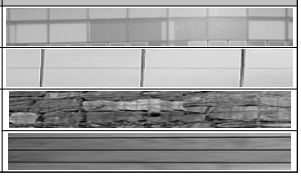 </td></tr>
<tr><td>보조색</td><td>8.0-9.0</td><td>-</td><td>N</td></tr>
<tr><td>강조색</td><td colspan="3">재료자체의 물성에 의함</td><td></td></tr>
</table>
</td></tr>
</table>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계획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 및 가감속 차로 구간에 설치 할 수 없다.
- 도로의 교차지점, 가각 부분에서 5m이내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차량 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제시된 내용을 따른다.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변경사항 -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축소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에 따름	

나.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추가적인 설치 기준 준수한다.
- 옥상간판·건물기둥이용 세로형간판, 현수막, 광고(선전)탑 등은 설치 표시할 수 없다.
-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 입주업소에 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표시하고, 간판으로 인지 될 수 있는 표시물은 설치할 수 없다.
  - 창문이용 광고물은 안전띠 개념으로 높이 20cm이하로 표시하고, 재질은 접착성이 있는 비닐, 접착시트 등의 재질을 사용하며, 전광류는 사용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가로형 간판은 건축벽면 가로폭의 80%이내, 최대 10m 이내에서 입체형 간판만 허용하고, 세로 크기는 최대 60cm 이내로 표시토록 한다.

-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를 입체형만으로 추가 가능 (단, 둘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 형태 재질은 획일적으로 대량 사용되었던 재질에서 벗어나 목재, 천연, 금속,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건축물의 외무 마감재와 조화로운 재질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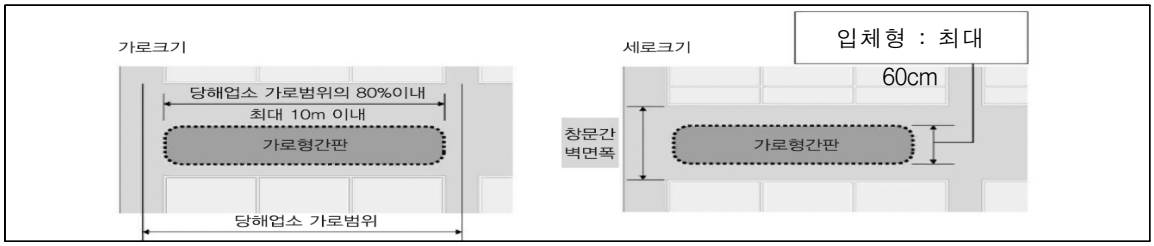

• 돌출형 간판은 3층 이상부터 설치가 가능하며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표시하고, 2개이상 설치 시 돌출폭은 일치시킨다.

- 세로 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를 고려하여 1.0m 이내로 설치하고, 두께는 30cm 이내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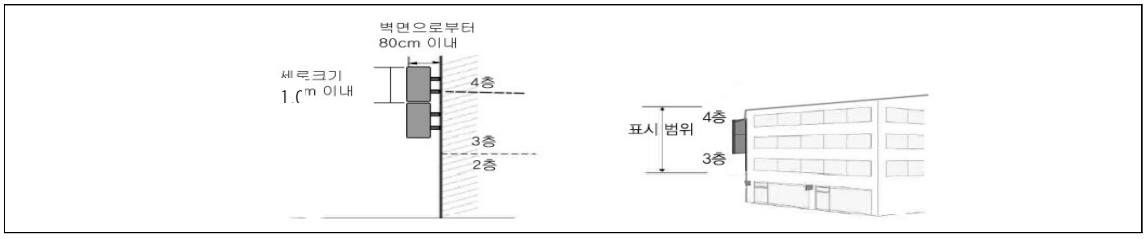

다. 주차장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주차장법」 및 「고창군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르되 주차 건축물은 불허하며, 기계식 주차장 또한 설치할 수 없다.

3 고창 군관리계획(월곡지구 농어촌뉴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고창군 고시 제2019-110호

고창 군계획시설(도로:소로2-군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도로:소로2-군5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 창 군 수

2019년 9월 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소로2-군5호)
   - 명 칭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확포장 L=830m, B=6~8m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7.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고창	고수	은사리	219-7	답	350	23	-	고창군			
2	고창	고수	은사리	219-2	도	122	47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419	박공섭			공유지분 3분의1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420	박연규			공유지분 3분의1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287	박순구			공유지분 3분의1
3	고창	고수	은사리	242-3	도	96	10	-	고창군			
4	고창	고수	은사리	218-4	도	227	188	-	고창군			
5	고창	고수	은사리	242-2	도	3	3	48	대한불교 조계종문수사			
6	고창	고수	은사리	218-3	도	30	30	고창읍 내동리 112	김준영			합유자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98	김영무			합유자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112	김명수			합유자
7	고창	고수	은사리	242-7	전	46	46	48	대한불교 조계종문수사			
8	고창	고수	은사리	242-5	도	50	50	-	고창군			
9	고창	고수	은사리	218-5	답	259	259	-	고창군			
10	고창	고수	은사리	218-2	도	23	23	고창읍 내동리 112	김준영			합유자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98	김영무			합유자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112	김명수			합유자
11	고창	고수	은사리	242-6	전	2	2	48	대한불교 조계종문수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2	고창	고수	은사	217-2	답	23	23	-	고창군			
13	고창	고수	은사	243-2	도	63	63	고수면 은사리 223	박동진			
14	고창	고수	은사	217-1	도	107	74	-	고창군			
15	고창	고수	은사	243-4	답	1014	1014	-	고창군			
16	고창	고수	은사	949	도	2817	716	-	건설부			
17	고창	고수	은사	산16-1	임	555	555	-	고창군			
18	고창	고수	은사	243-3	도	31	31	-	고창군			
19	고창	고수	은사	244-2	도	7	7		김준학			
20	고창	고수	은사	244-3	대	93	93	-	고창군			
21	고창	고수	은사	245-2	도	13	13	-	고창군			
22	고창	고수	은사	245-3	답	24	24	245	장한규			
23	고창	고수	은사	246-3	대	144	137	고창읍 중앙로 288-10,나동401호 (태양아파트)	안병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24	고창	고수	은사	246-4	답	355	355	-	고창군			
25	고창	고수	은사	246-1	도	10	10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62	허두옥			
26	고창	고수	은사	247-3	도	46	46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58	박윤진			공유지분2분의 1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809	김호영			공유지분6분의 1
								장성군 황룡면 금판리 281	김규영			공유지분6분의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8	김윤태			공유지분6분의 1
27	고창	고수	은사	247-4	도	142	142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58	박윤진			공유지분2분의 1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809	김호영			공유지분6분의 1
								장성군 황룡면 금판리 281	김규영			공유지분6분의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38	김윤태			공유지분6분의 1
28	고창	고수	은사	247-6	답	252	252	-	고창군			
29	고창	고수	은사	251-1	답	118	5	-	고창군			
30	고창	고수	은사	946	도	740	232	-	건설부			
31	고창	고수	은사	247-5	답	60	37	-	고창군			
32	고창	고수	은사	251-2	답	146	146	-	고창군			
33	고창	고수	은사	944	구	33922	911	-	건설부			
34	고창	고수	은사	252-6	도	33	33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264	박옥진			
35	고창	고수	은사	252-8	답	134	134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02 평내마을 대주파크빌 1902-105	박한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36	고창	고수	은사	252-5	도	63	27	고수면 은사리 264	박옥진			
37	고창	고수	은사	253-2	대	50	50	-	고창군			
38	고창	고수	은사	252-3	도	122	54	-	고창군			
39	고창	고수	은사	252-7	답	314	314	-	고창군			
40	고창	고수	은사	18-2	도	212	11	-	고창군			
41	고창	고수	은사	17	답	23	23	-	고창군			
42	고창	고수	은사	945	도	40	17	-	고창군			
43	고창	고수	은사	15-1	답	48	48	-	고창군			
44	고창	고수	은사	13-6	답	27	27	-	고창군			
45	고창	고수	은사	14	답	129	129	-	고창군			
46	고창	고수	은사	13-5	답	56	56	-	고창군			
47	고창	고수	은사	13-4	답	191	191	-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48	고창	고수	은사	11-1	답	180	180	부곡리 86	박은희			
49	고창	고수	은사	12-1	답	782	782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35-3	박양규			
50	고창	고수	은사	산23-1	임	171	171	서울 종로구 창신동 611-74	조기선			
51	고창	고수	은사	산26-1	임	507	507	-	고창군			
52	고창	고수	은사	10-5	답	7	7	-	고창군			
53	고창	고수	은사	10-4	답	34	34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35-3	박양규			
54	고창	고수	은사	9	답	119	106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135-3	박양규			
55	고창	고수	은사	산27-2	임	101	101	고창군	국			
56	고창	고수	은사	4-1	답	80	80	남양주시 평내동562 평내마을 주공아파트1112-401	박양규			
57	고창	고수	은사	5-1	전	148	104	고창군 고수면 수랑동길 79	변동해			
58	고창	고수	은사	산27-1	임	39	19	-	고창군			
59	고창	고수	은사	산25-3	임	67	36	-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 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연번	토 지 소 재 지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 번	지목	(㎡)	(㎡)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60	고창	고수	은사	산28-1	임	1552	1552	-	고창군			
61	고창	고수	은사	2	전	522	342	-	고창군			
62	고창	고수	은사	산25-2	임	1653	1653	-	고창군			
63	고창	고수	은사	산25-1	임	147	95	-	고창군			
64	고창	고수	은사	1-2	전	71	71	-	고창군			
65	고창	고수	은사	산31-1	임	205	205	-	고창군			
							이	하	여	백		

고창군 공고 제2019 - 1148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의 효율적 보전·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용어, 업무 등(안 제1조～안 제5조)
○ 시설의 사용방법, 사용료, 사용제한 등 (안 제6조～안 제14조)
○ 시설의 운영방법, 부대시설, 위탁 등(안 제15조～안 제19조)
○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위원회 내용 등(안 제20조～안 제27조)
○ 습지보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안 제28조～안 제33조)

3. 의견제출

○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생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 063-560-2874, Fax 063-560-273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생태환경과(☎ 063-560-2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운곡 람사르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군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람사르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시설"이란 습지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한 시설로, 운곡 람사르습지 홍보관, 생태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습지시설을 제외한 운곡습지 내 탐방열차, 야외무대, 놀이터, 수변경관쉼터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란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시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습지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습지 내 시설물의 관리 · 운영
2. 습지의 개발 및 보전 등 이에 따른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3. 습지시설 수입금 관리
4.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시설의 사용 및 이용

제6조(사용범위) 습지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7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 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요원으로부터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수강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당초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시설사용
2.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세미나,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 사용
3. 시설의 직접적인 홍보에 해당하는 사용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6.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

수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고장 또는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을 취소 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사용일 1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3장 시설의 운영

제15조(운곡람사르습지 홍보관) 운곡 람사르습지 홍보관(이하 "홍보관"이라고 한다.)은 전시실, 포토존, 옥상정원, 세미나실 등이며, 운곡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 · 식물종과 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관광 활성화 기능을 수행한다.

제16조(운곡습지 생태공원) 군수는 관광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운곡습지 탐방열차) ① 군수는 탐방객에게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곡습지 탐방열차"(이하 "탐방열차"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탐방열차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별지 제3호로 한다.

③ "탐방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이용료 일부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며 별도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운영요원) 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도사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세미나, 교육 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사람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

제19조(관리 위탁) 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위원회

제20조(설치)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자문과 습지 관련 공익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행정 · 민간)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행정)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민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운곡 습지 관할구역 읍 · 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창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 의원 1명
2. 국내 · 외 생태환경 전문가
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
4. 지역 주민대표, 언론인 등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한 자문
2. 습지관리계획 수립
3. 습지 관련 공익적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4.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위탁받은 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제출하는 사항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행정)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행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민간)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행정 · 민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7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고창군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고창군 공무원 중 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7조(수당 등)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사업

제28조(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 지원) 군수는 운곡 람사르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9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운곡 람사르습지 주변 마을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곡 람사르습지 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고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용 료(제8조 관련)

□ 습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운곡습지 홍보관 (전 시 실)	기준 없음	무료	무료	
생태공원 (운곡습지)	기준 없음	무료	무료	
운곡습지 홍보관 (세미나실)	2시간 (기본사용시간)	30,000원	40,000원	기본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별표 2]

이 용 료(제8조 관련)

□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운곡습지 탐방열차	일 반	3,000원	3세 이상
	영 아	무 료	0세 ~ 3세
※ 운곡습지 탐방열차 이용객에게 1인당 1,000원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원			

[별지 제1호서식]

운곡 람사르습지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연락처	
	성명 (대표 자)		생년월일	
신청내용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 용 료	
변경내용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목적		사 용 료	

고창군이 정하는 사용료 및 사용조건을 수락하며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운곡 람사르습지 시설 [사용제한/사용허가취소] 통지서

사용자	주 소 (단체명)		연 락 처	
	성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용내용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사용인원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취소사유				

[별지 제3호서식]

운곡습지 탐방열차 운영기준(제15조 관련)

제1조. 운행구역

① 운곡습지 친환경주차장에서부터 운곡습지 생태공원까지로 한다.

② 운곡습지 탐방열차 운전사는(이하 '운전사'라 한다.) 어떤 사유에도 1항의 운행 구역 외의 운행은 할 수 없다.

제2조. 운행시간

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시설의 고장, 계절상황, 기상이변 및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예정된 운행횟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3조. 시설의 관리 및 사용

①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료, 운행노선, 운행시간,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곡습지 탐방열차 운전사는(이하 '운전사'라 한다.) 운행시간을 준수하여 운행해야하며, 운행 전 이용자의 탑승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사는 매일 1회 첫 운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탐방열차는 수용정원과 무게를 초과하여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준수사항

① 만 8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운전자 또는 시설 운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탑승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행위

① 정원초과, 운행시간과 운행 노선·구간 외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② 운전자에게 폭언,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

③ 시설 주변 및 탐방열차에 탑승하여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④ 시설 내 음주행위 등 그 밖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6조. 이용자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2.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3. 탑승권을 미소지한 자
4.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 변상조치

① 시설을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거나 시설의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과실로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의 운행과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8조. 보험가입

① 시설 운영자는 운곡습지 탐방열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와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보험 적용범위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운곡 람사르습지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9년 08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19-1166호

2019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시행 공고

고창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번호판 조회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아래주소)
(www.emissiongrade.mecar.or.kr)/본인확인인증절차를 통해 확인가능

2019년 8월 일

고 창 군 수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물량 : 1,000대**(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 변경가능)**

- 사회적 공헌·약자, 화물차(1톤 이상), 일반차량 구분 모집하며, 사회적 공헌·약자 및 화물차 신청자가 배정물량에 미달시 일반 참여자에 포함

구분	물량 배정(대)	비고
계	1,000	100%
사회적 공헌·약자	200	20%
화물차(1톤 이상)	300	30%
일반	500	50%

○ 사회적 공헌·약자 세부 기준(개별 법령 등에 따라 정한 자)

①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⑤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조기폐차 신청시 사회적 공헌·약자 관련 증명서 제출

○ **대상차량 : '05. 12.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번호 및 차대번호 입력조회)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기간

2019. 8. 16.(금) ~ 8. 30.(금) 09:00 ~ 18:00

※ 단, 토·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차량 소유자 해당 읍·면사무소(방문접수/전화접수받지 않음)

□ 지원대상(아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①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③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④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⑤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 사회적 공헌·약자 : 대상물량의 20% >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화물차(1톤 이상) : 대상물량의 30% >

1. 대형차(배기량이 큰 순서)→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순으로 선정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일반 : 대상물량의 50% >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가. 영업용(화물용) → 농업용 → 자가용 순으로 선정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단, 차순위 접수자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급

□ 지원금액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하되, 그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음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차량*('19.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로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 조기폐차 후 신차구입까지 4개월을 초과하면 추가보조금 지급 제한(신청자에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한다.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자가용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동일 기준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절사**한다.

○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차량폐차시까지 지방세를 완납할 경우 보조금 지급.

□ 저소득층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

※ 생계형 차량은 조기폐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보조금 지급 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	차량 정상가동 여부 및 자동차 종합검사	→
차량 소유주 → 읍면 (별지 제2,3호 서식)		고창군 →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주 (검사대행업체)	

차량 정상가동 여부 및 자동차 검사 결과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조기폐차 (확인서 발급후 2월 이내)	→
차량 소유주 → 읍면 (별지 제6호 서식)		고창군 → 차량 소유주 (별지 제4호 서식)		차량 소유주 (폐차장)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차량 소유주 → 읍면 (별지 제5호 서식)		고창군 → 차량 소유주

□ 작성 및 신청 안내

① 조기폐차 신청 : 고창군 주소지 기준 해당 읍·면사무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차량소유주→고창군 지정 공업사→소유주→고창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통보 받은자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10일이내) : 별지 제6호 서식
  - **대상차량확인(고창군 지정 공업사)**
  - 대상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 업소명(도장),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정비요'또는'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③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고창군→ 차량 소유주

④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후 **2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미이행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⑤ **보조금 신청** : 차량 소유주 → 고창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5호 서식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고창군에서 발급) : 별지 제4호 서식

⑥ **보조금 지급** : 고창군 → 소유주
-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 2019년 고창군 정기검사 지정공업사 현황

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1	우리자동차공업사	564-5511	고창군 고창읍 덕산길 59
2	무광자동차공업사	564-7676	고창군 고창읍 백양길 10
3	광진공업사	564-2723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8
4	고창자동차공업사	564-2600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051-7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 차량 소유자 해당 읍·면 **방문제출**
(팩스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 의 : 고창군 생태환경과(560-2875~6) 및 차량 소유자 해당 읍·면

붙임 1.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3. (별지 제4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4.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5.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u>개인정보 수집·이용</u>

◈ **(수집 ·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고창군수 귀중

[참고1]「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2]「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6">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대 상
자동차</td><td>자동차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자동차제원</td><td colspan="5">□연식( )년 □배기량( )CC</td></tr>
<tr><td>정원(승합)</td><td colspan="4">명</td></tr>
<tr><td>중량(화물)</td><td colspan="4">□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차명 및 형식</td><td colspan="2">/</td><td>용 도</td><td colspan="2"></td></tr>
<tr><td>등록일자(차령)</td><td colspan="5">년 월 일 (년 월)</td></tr>
<tr><td>주행거리</td><td colspan="2"></td><td>사용 연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확 인
결 과</td><td>지급 여부</td><td colspan="5">□ 가 □ 부</td></tr>
<tr><td>지급불가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지원
가액</td><td>기본</td><td colspan="4">원 (₩)</td></tr>
<tr><td>추가</td><td colspan="4">원 (₩)</td></tr>
<tr><td colspan="7">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창군수 (인)</td></tr>
<tr><td colspan="7">※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3]「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4]「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6">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신 청
자동차</td><td>차량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차 종</td><td colspan="5">□연식( )년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5">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5">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 rowspan="9">확
인
항
목</td><td>동일성 확인</td><td colspan="2">-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td><td rowspan="9">확
인
결
과</td><td colspan="2">□ 일 치 □ 불일치</td></tr>
<tr><td>원동기</td><td colspan="2">-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계통의 손상 및 누출 여부</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td><td colspan="2">-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조 향</td><td colspan="2">-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제 동</td><td colspan="2">-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전 기</td><td colspan="2">-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그외 주요
부품</td><td colspan="2">-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 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 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해당 부품명:)</td></tr>
<tr><td>첨부물</td><td colspan="4">사진 4매(전・후・좌・우면)</td></tr>
<tr><td rowspan="2">판 정
결 과</td><td>정상 가동 여부</td><td colspan="5">□ 가 □ 부</td></tr>
<tr><td>불가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고창군수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창군 제2019 - 1184호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공고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고 창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고창군 노인복지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2019.9월 ~ 2019.12월 (4개월)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등, 보수지급,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그 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2. 응시자격 및 요건

○ 자격요건

가. 만 18세 이상 ~ 57세 미만

나.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고창군에 되어 있는 자

다. 운전면허증 소지 차량운행자
(주1회 이상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현장 순회 가능한 자)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시험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병행실시

- **서류심사** : 임용예정 직위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면접심사** : 정신자세, 인성, 해당분야의 지식과 응용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선발일정

○ 공 고 기 간 : 2019. 08. 20 ~ 08. 23.(4일간)
○ 접 수 기 간 : **2019. 08. 20 ~ 08. 23 (4일간) 09:00~18:00**
※ 주말제외
○ 접 수 장 소 : 고창군 사회복지과 경로복지팀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면 접 심 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70점)+면접심사(30점) 후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08. 28(수) 개별통보
○ 근로계약체결 :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후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 될 경우 개인별 안내함.

5.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 증명서 1부(경력보유자, 경력별 각 1부)
○ 자격증 및 학위증 사본1부(자격증 원본 지참)
※ 응시원서는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수준 : **월 1,746,000원(4대보험 포함)**
○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 대상자(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가.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에서 제5항에 의거 구직자(채용합격자는 제외)의 반환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기간 내에(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나. 반환청구 시 붙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직접방문 가능)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본인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우편수수료)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출서류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시점까지 보관하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주민복지실(☎063-560-2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고창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 접수번호		응시직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사 진 (1)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전화) (H.P)			

학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위명
			고등학교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학력	직업

자격면허	취득일자	종 별	병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주요경력	기 간	직장명	직 위	담당업무

귀 군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인)

고 창 군 수 귀하

응시표	성명	한글		※응시번호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한자		응시직급	**노인사회활동전담인력**	
	주민등록번호		-			
	2019년 월 일 **고 창 군 수**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 **주 소 :**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주민등록표상 주소지)
-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 **학 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 **자격.면허**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 기재
-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이 력 서

□ 인적사항

<table>
<tr><td rowspan="3">사 진
3.5㎝×4.5㎝</td><td rowspan="2">성
명</td><td>한글</td><td></td><td>생 년 월 일</td><td>(세)</td></tr>
<tr><td>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현주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현소속</td><td colspan="3">직장명 및 부서 : 직위 :</td></tr>
<tr><td rowspan="2">병 역</td><td>군필여부</td><td colspan="2"></td><td>복무기간</td><td></td></tr>
<tr><td>최종계급</td><td colspan="2"></td><td>면제사유</td><td></td></tr>
</table>

□ 학 력 (최고 학력까지)

부터	까지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명

□ 경력사항

기 간	직 장 명	직 위	담당 업무내용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 . ~ ’ . . (년 월)			○ ○ ○

※ ① 근무한 모든 경력 기재하되, 재직(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② 경력(재직) 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일)로 작성하시고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기타 용지가 부족할 시는 추가로 작성가능(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상 훈

년 월 일			상 훈 내 용	수여기관

□ 기술 및 자격증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서명)

【서식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종	
생년월일	19 . . . (남, 여)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성격의 장·단점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작성요령 : 응모동기, 전공, 주요경력과 본인의 의지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장점 등을 자유롭게 기재

2019. . . 작 성 자 : (인)

【서식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고창군 공고 제2019-120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고창군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고 창 군		
	대표자 (성 명)	고창군수 (건설도시과장)	주소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소하천명		백양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501번지(구, 농림부)외 3개필지		
	면적	20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년 08월 13일 ~ 영구		
	목적 및 사유	소하천 횡단 교량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 치 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501번지외 3개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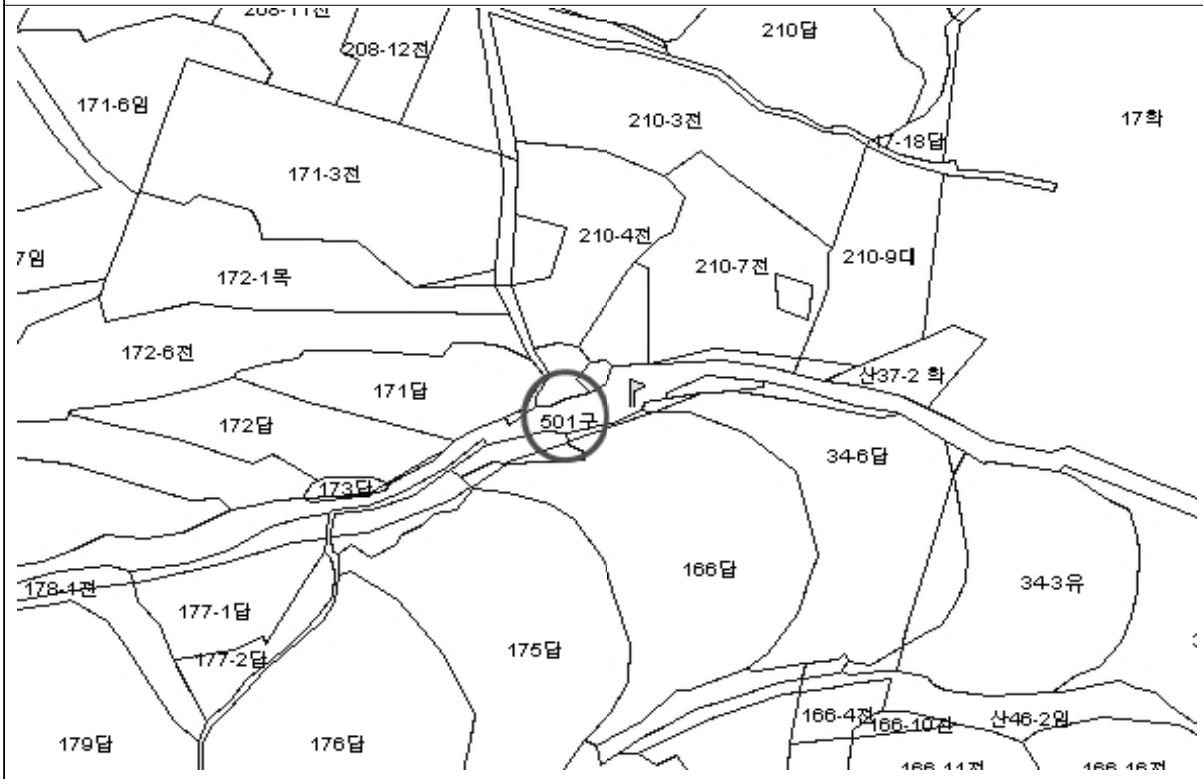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501번지외 3개필지

고창군 공고 제2019-1207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고창군에서 시행중인 『부안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30일

고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1-903호)
- 명 칭 : 부안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L=100m

다. 사업기간 : 2019. 8. ~ 2020. 12. 30.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성 명 : 고창군수(건설도시과장)
-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2. 토지 출입 내용

가. 출입사유 : 조사·설계, 지적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나. 출입할 토지 : “붙임” 토지조서 참조

다. 출입기한 : 2019. 8. 30. ~ 사업종료시까지

3.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 전북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137-3번지 외 19필지에 소재한 토지 및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 2019. 8. 30. ~ 2019. 9. 16. (18일간)

라. 열람장소 : 고창군청 3층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063-560-2567)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 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 추천감정평가 업자명 :

○ 추천일자 :

토지 소재지	당초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자 확 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도시디자인팀(☏063-560-2567)으로 문의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부안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고창	부안	중흥	137-3	도	20	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	송*삼			
2	고창	부안	중흥	137-2	대	6	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	송*삼			
3	고창	부안	중흥	138-4	대	38	18		고창군			
4	고창	부안	중흥	138-16	대	7	7		고창군			
5	고창	부안	중흥	138-15	대	134	13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	김*희			
6	고창	부안	중흥	282-38	대	12	12		고창군			
7	고창	부안	중흥	282-18	대	51	21		고창군			
8	고창	부안	상등	674-25	대	40	16		고창군			
9	고창	부안	상등	674-96	대	10	10		고창군			
10	고창	부안	상등	674-97	대	45	4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	김*희			
11	고창	부안	상등	674-70	천	7,584	73		국(건설부)			
12	고창	부안	상등	395	잡	335	73		고창군			
13	고창	부안	상등	682-7	도	2,534	123		국(건설교통부)			
14	고창	부안	상등	399-2	천	88	21		고창군			
15	고창	부안	상등	386-9	답	4	4		고창군			
16	고창	부안	상등	386-5	답	389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	홍*현			
17	고창	부안	상등	386-7	도	233	109		국(건설교통부)			
18	고창	부안	상등	386-8	답	121	121		고창군			
19	고창	부안	상등	952-2	도	739	45		국(농수산부)			
20	고창	부안	상등	399	잡	1,995	439		고창군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건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공사명 : 부안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물건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고창	부안	중흥	138-3 (138-15)	건(축)물: 주택및상가	블록조 슬라브	140.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중흥리 *	김*희			
					공작물 (보일러실)	블록조 스레트	2.08㎡	"	"			
					수목 (매실나무)		1주	"	"			
					수목 (감나무)		5주	"	"			
					수목 (꽃나무)		1주	"	"			
					수목 (황매화)		1주	"	"			
					수목 (연산홍)		6.0㎡	"	"			
					수목 (주목)		1주	"	"			
					수목 (단풍나무)		1주	"	"			
					수목 (라일락)		1주	"	"			
					기타 (대문)	철재 대문	1식	"	"			
					기타 (장독대)		1식	"	"			
					기타 (수도대)		1식	"	"			
					기타 (담장)		1식	"	"			
					기타 (담장)		1식	"	"			
					기타 (담장)	블록· 콘크리트	30.0㎡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구역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고창군 공고 제2019-120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고창군수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고 창 군		
	대표자 (성 명)	고창군수 (건설도시과장)	주소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소하천명		정거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전라북도 무장면 무장리 695-12외 7필지		
	면적	6,005.4㎡ (영구점용 1,056.9㎡)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9년 08월 26일 ~ 영구(공사기간 2019. 8. ~ 2020. 6.)		
	목적 및 사유	군계획(도로)시설 사업에 따른 소하천 횡단교량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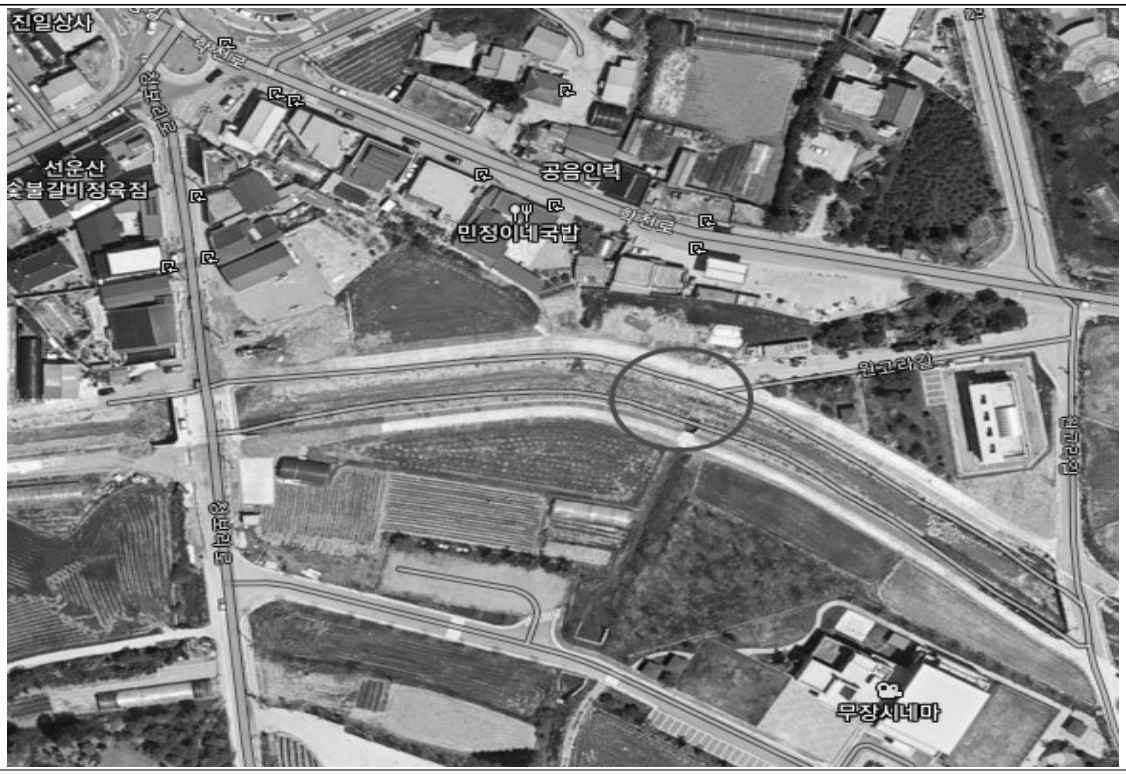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695-12번지외 7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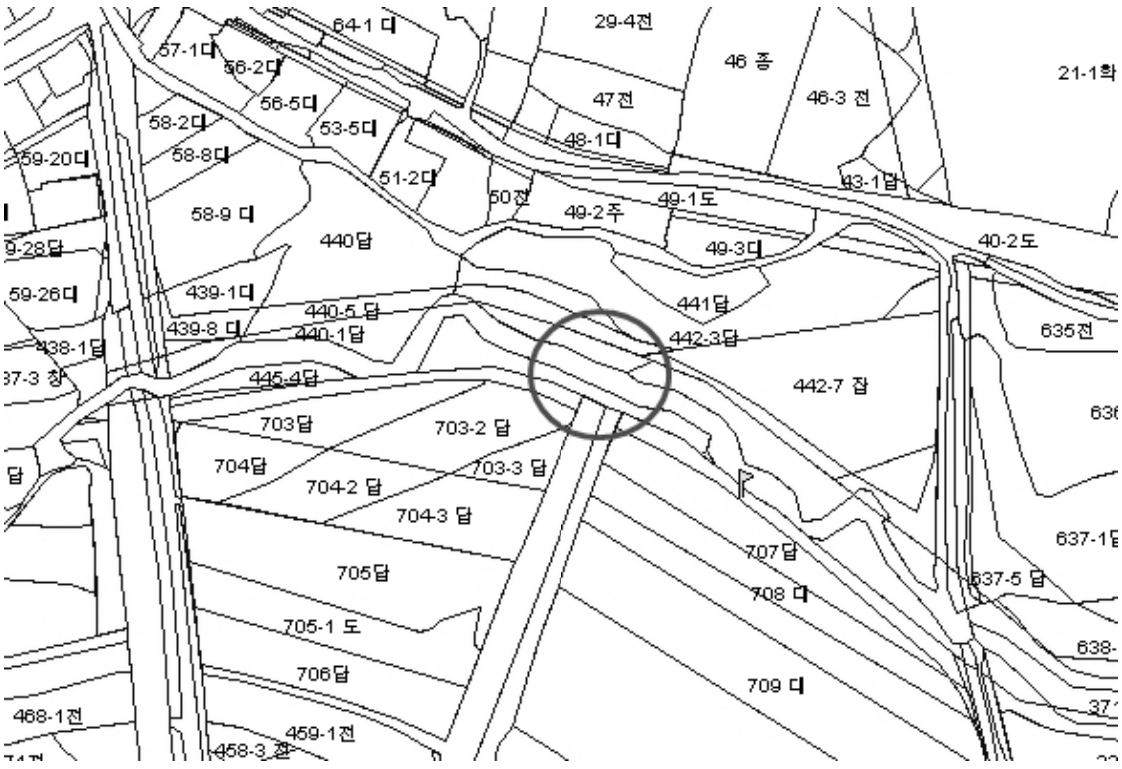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695-12번지외 7필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9 - 72호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２０１９년 ８월 29 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와 안 제2조)
○ 임대사업장의 기능, 운영 및 관리(안 제4조와 안 제5조)
○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안 제6조)
○ 임대절차, 임대기준 및 기간(안 제7조와 안 제8조)
○ 안전사고대비(안 제9조)
○ 임대료, 임대료 감면, 임대료 반환(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임대의 제한(안 제15조와 안 제16조)
○ 농작업의 대행(안 제17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등(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9.~ 2019. 9. 18.(20일간, 초일 미산입)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우56440 /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당산로 94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063-560-8872, FAX 063-560-8869)

라. 제출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이메일(syalove9@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063-560-8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지방자치법」제 127조 및 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과 농업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임대농기계를 사용자에게 직접 운반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대사업장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업기계 고장 예방을 위한 실수요자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임대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사업장별 4명 이상의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③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④ 임대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⑤ 임대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를「고창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우. 단,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내구연한 이전에 처분할수 있다.

2. 훼손된 농업기계의 수리비가 농업기계의 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한 경우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등) ① 군수는 관내 300명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농업기계 구입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의 방법은 우편을 통한 서면(유선)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와 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임대농업기계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하고, 해당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임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고창군 농업인 이거나 경작지가 고창군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별지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③ 1농가에 1회당 기종별 1대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 농기계 수요상황을 고려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출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사고대비) ① 임대농업기계 운반사고 예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임대사업장의 운송 장비와 인력 범위내에서 임대농기계를 마을회관까지 무상으로 운송할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송장소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운송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임대료 및 기타비용)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창군 수입증지용 자동인증기로 수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유류대 및 제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 감면) ① 군수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용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임대 신청한 사람이 농업기계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기간 만료일 전에 농업기계를 반환하여 사용일이 남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사용자의 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임대농업기계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태로 수리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청소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관리요원의 농업기계의 고장 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1.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임대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1년 또는 임대계약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농업기계를 3회 또는 3일 이상 지체하여 반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업기계 임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7조(농작업의 대행)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고령경작자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작업 대행료 및 농작업의 범위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기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장,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및 여성농업인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유관기관·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3. 농업인
4. 그 밖에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제외하고「고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관리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시행일:2020.01.01.)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5,000만원 이상	210,000원

단, 콩정선선별기는 40kg 선별에 2,000원으로 하며 농기계 상,하차를 위한 사다리는 무료로 한다.

[별표 2]

농업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제12조, 제15조 관련)

구 분	반환금액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용 중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용 중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취소일까지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사용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 전액
○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

<table>
<tr><td rowspan="2">접수번호</td><td colspan="4" rowspan="2"></td><td>처리기간</td></tr>
<tr><td>10일</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4">임대농업기계</td><td>농업기계명</td><td></td><td>규격 및 형식</td><td colspan="2"></td></tr>
<tr><td>작업기계명</td><td></td><td>규격 및 형식</td><td colspan="2"></td></tr>
<tr><td>수 량</td><td></td><td>작업종류</td><td colspan="2"></td></tr>
<tr><td>기 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창군수 귀하</td></tr>
</table>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기계 임대 및 수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 다만, 농업기계 임대 대상이 아닐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임 차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대내역	농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작업기계명		규격 및 형식		수량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사 용 료	원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 (지번 :)					

농업기계 임대계약 조건

1. 임대한 농업기계는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농업기계 임대 기간 중 소모되는 운반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농업기계 임대기간 중 도난, 파손 등의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 임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깨끗이 세척 후 계약 종료일 오후 6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6. 임차인이 임의로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7.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1조 관련)

농업기계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고창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 감면 승인서(제11조 관련)

감 면 대상자	주 소	
	성 명	
임대내역	농업기계명	
	형 식	
	기대번호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납 부 액	원	
감 면 액	원	
감면사유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임대료 반환 청구서(제12조 관련)

납 부 자	주 소	
	성 명	
납 부 액		
납 부 일		
반환 청구액		
반환 청구 사유		
반환금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임대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작성요령 :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예금주 성명이 동일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제23조 관련)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수납대장(제23조 관련)

월일	부과 및 징수대상자			대여기종 및 납부금액				감면 면제 반환 금액	결 재		
	성명	주 소	생년 월일	대여 기종	대여 일수	부과 금액	납부금 액		담당자	팀장	과장

[별지 제8호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제23조 관련)

월일	임차인현황			제한사유	제한일	해제일	결 재		
	성명	주 소	생년월일				담당자	팀장	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고예고 조 례 명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명)		전 화	
	주 소			
검 토 의 견(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